##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1.0

이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1.0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요약 번역한 것으로, 공식 번역이 아니며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영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자표시1.0 (CC BY)**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5. **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6.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공정 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3.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4.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책임 부인**

1.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배포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다음 사항을 진술 및 보증하게 됩니다.
	1. 본 이용허락을 제공하고 본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를 일체의 이용료 지불 없이 적법하게 행사하도록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용허락자가 갖고 있습니다.
	2. 저작물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법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권리 및 그 밖의 어떠한 제삼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제삼자에게 명예 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그 밖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2.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 및 제5조의 보증 사항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원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3.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1.0 (BY-N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5. **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6.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공정 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3.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4.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귀하는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제3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교환하는 것은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로 의도하였거나 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책임 부인**

1.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배포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다음 사항을 진술 및 보증하게 됩니다.
2. 본 이용허락을 제공하고 본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를 일체의 이용료 지불 없이 적법하게 행사하도록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용허락자가 갖고 있습니다.
3. 저작물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법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권리 및 그 밖의 어떠한 제삼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제삼자에게 명예 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그 밖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4.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 및 제5조의 보증 사항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원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3.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1.0 (CC BY-SA)**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5. **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6.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공정 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3.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4.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귀하는 본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장래의 개정된 이용허락 또는 [예컨대 일본의 귀속-동일조건허락(Attribution-Sharealike) 2.0과 같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이용허락의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국가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2차적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나 앞서 언급한 다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을 배포받는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으며,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과 관계되는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2차적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2차적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2차적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3.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책임 부인**

1.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배포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다음 사항을 진술 및 보증하게 됩니다.
	1. 본 이용허락을 제공하고 본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를 일체의 이용료 지불 없이 적법하게 행사하도록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용허락자가 갖고 있습니다.
	2. 저작물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법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권리 및 그 밖의 어떠한 제삼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제삼자에게 명예 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그 밖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2.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 및 제5조의 보증 사항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원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3.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변경금지1.0 (CC BY-ND)**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5. **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6.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공정 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책임 부인**

1.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배포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다음 사항을 진술 및 보증하게 됩니다.
2. 본 이용허락을 제공하고 본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를 일체의 이용료 지불 없이 적법하게 행사하도록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용허락자가 갖고 있습니다.
3. 저작물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법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권리 및 그 밖의 어떠한 제삼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제삼자에게 명예 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그 밖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4.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 및 제5조의 보증 사항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4.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1.0 (CC BY-NC-SA)**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5. **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6.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공정 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3.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4.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귀하는 본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장래의 개정된 이용허락 또는 [예컨대 일본의 귀속-동일조건허락(Attribution-Sharealike) 2.0과 같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이용허락의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국가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2차적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나 앞서 언급한 다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을 배포받는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으며,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과 관계되는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2차적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2차적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2차적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3. 귀하는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제3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교환하는 것은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로 의도하였거나 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4.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책임 부인**

1.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배포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다음 사항을 진술 및 보증하게 됩니다.
2. 본 이용허락을 제공하고 본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를 일체의 이용료 지불 없이 적법하게 행사하도록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용허락자가 갖고 있습니다.
3. 저작물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법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권리 및 그 밖의 어떠한 제삼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제삼자에게 명예 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그 밖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4.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 및 제5조의 보증 사항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원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3.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1.0 (CC BY-NC-ND)**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5. **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6.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공정 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귀귀하는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제3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교환하는 것은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로 의도하였거나 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책임 부인**

1.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배포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다음 사항을 진술 및 보증하게 됩니다.
2. 본 이용허락을 제공하고 본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를 일체의 이용료 지불 없이 적법하게 행사하도록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용허락자가 갖고 있습니다.
3. 저작물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법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권리 및 그 밖의 어떠한 제삼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제삼자에게 명예 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그 밖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4.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 및 제5조의 보증 사항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4.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